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37호 2026. 4. 6. (월)

고시 · 공고

-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
- 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발령 9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입 법 예 고

「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6일

목 포 시 장

1. 조 례 명 : 「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중 「지역축제 운영·지원 적정성 제고」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제척·기피 및 회피의 법적 근거 마련
-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축제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규정 보완
- 축제추진위원회 전체 위원 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,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

3. 주요내용

-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조정(안 제 3조)
 - (기존) 당연직 위원 5명 -> (변경) 당연직 위원 3명
 - 위원회 정원 감축에 따른 당연직 위원(해양개발과장, 수산산업과장) 삭제
 - (기존) 위촉직 시의원 4명 -> (변경) 위촉직 시의원 2명
 - 위원회 정원 감축에 따른 위촉직 위원 수 조절
-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 근거 조항 신설(안 제6조 2) 등
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·기피 근거 조항 마련
 -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는 의무 부가
- 축제 평가 및 결과반영 규정 보완(안 제 13조 제 2항)
 - 축제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
- 오탈자 등 수정(안 제1조, 제2조제1항)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
-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 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

5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6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7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4. 6. ~ 2026. 4. 27.〔21일간〕

8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9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 없음

10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11. 의견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7일까지 목포시장(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○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

목포시청 관광문화교육국 관광과(3층)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8569), 직접방문 등

12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7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”로, “축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축제추진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예술과장, 해양개발과장, 수산산업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4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
2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·연구·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
4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행사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2항 위촉위원의 정수는 현재 위촉된 위원 임기 종료 이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에 따라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목포시 <u>축제추진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----- ----- ----- <u>축제추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능) ① <u>위원회</u> 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제2조(기능) ① <u>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, 관광과장, <u>문화예술과장</u> , <u>해양개발과장</u> , <u>수산산업과장</u> 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시의회 의원 4명 2. ~ 5.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문화예술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----- 2명 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생 략)

<신 설>

제13조(평가 및 결산) (생 략)

<신 설>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
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

2.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· 연구 ·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

4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평가 및 결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행사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목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훈령 제876호

「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.

2026년 4월 6일

목 포 시 장

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

목포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·다목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는 경우, 시장사용료를 반입 상품 거래금액의 1,000분의 3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래 후물류, 상물분리거래 외 온라인도매시장의 취지에 부적합한 거래 또는 유통 효율 개선 효과가 낮은 거래에 대하여는 시장사용료를 가산하여 1,000분의 5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.

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2(온라인도매시장 상품 전용 반입·적재공간의 지정 및 관리)

- ① 도매시장에 등록된 도매시장법인·중도매인에 한하여 온라인도매시장

에서 거래 완료된 상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.

② 도매시장법인은 온라인 거래 물품과 오프라인 거래물품을 구분 관리 해야 하며,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공지하여야 한다.

③ 온라인도매시장 반입 활성화 시간은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. 해당시간은 경매장 면적의 100분의 50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반입한 물량은 경매장에 재상장 할 수 없으며, 소속 유통종사자 상호 간 거래를 하여서도 안된다. 다만,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로서 연간 온라인 도매시장거래 금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시장사용료) ① ~ ③ (생략)	제72조(시장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가 목·다목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 는 경우, 시장사용료를 반입 상품 거래금액의 1,000분의 3 이내로 징 수할 수 있다.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래 후물류, 상물분리거래 외 온라인 도매시장의 취지에 부적합한 거 래 또는 유통 효율 개선 효과가 낮은 거래에 대하여는 시장사용 료를 가산하여 1,000분의 5 이내 로 부과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78조의2(온라인도매시장 상품 전용 반입·적재공간의 지정 및 관리) ① 도매시장에 등록된 도매시장 법인·중도매인에 한하여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완료된 상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 할 수 있다.

② 도매시장법인은 온라인 거래 물품과 오프라인 거래물품을 구분 관리 해야 하며,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공지 하여야 한다.

③ 온라인도매시장 반입 활성화 시간은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. 해당 시간은 경매장 면적의 100분의 50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④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반입한 물량은 경매장에 재상장 할 수 없 으며, 소속 유통종사자 상호 간 거래를 하여서도 안된다. 다만, 중도 매인이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로서 연간 온라인 도매시장거래 금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